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319
----------	------------

제안연월일 : 2026년 3월 13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근거조항 오류를 정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의 근거조항 수정 및 내용과 범위를 각 호로 구분하여 명시
(안 제18조의2제2항)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대부료율의 확정이 아닌 하한 규정으로 조문 수정
(안 제26조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건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안 제26조제3항 중 “1,000분의 30으로”를 “1,000분의 30 이상으로”로 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8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u><신 설></u></p>	<p>제18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그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18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개정안과 같음)</p> <p>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건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 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유재산 중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총괄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시유재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u><신 설></u></p>	<p>제18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u> 2. <u>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건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 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u> 3. <u>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u> 4. <u>공유재산의 지분</u> 5. <u>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u> 6. <u>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u>
<p>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략)</p> <p><u><신 설></u></p>	<p>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유재산 중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소상</u></p>

③ ~ ⑦ (생략)

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총괄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시유재산에 한한다.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